

Walter Eucken의 「경쟁과 독점 그리고 기업가」

신동권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오이肯(Walter Eucken, 1891.1.17-1950.3.20)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인 1950년 1월 26일 독일의 휴양도시 비스바덴(Wiesbaden)의 자영업자단체 초청으로 행한 강연내용 중 중요부분만 요약, 정리해 보았다.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이肯은 F. Böhm, H. Grossmann Doerth, L. Mikisch 등과 함께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형성하면서 질서자유주의를 주창하였으며, 2차대전 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적인 사회경제질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완전경쟁사상은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상으로 밝혀졌으나 그의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이념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는 1925년 「국제통화의 문제(Das internationale Währungsproblem)」, 1940년 「경제학의 기초(Die Grundlage der Nationalökonomie)」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본 강연내용은 짧지만 그의 사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독점자본주의가 고조되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관념이 자라나던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부 격동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던 사상가의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 오이肯은 종종 하이예크(F.A. Hayek, 1899.3.8-1992.3.23)와 비교되어 소개가 된다. 오이肯이 경쟁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완전경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하이예크는 경쟁을 소극적 개념으로 규정하고〔소위 “발견의 절차로서의 경쟁(Der Wettbewerb als Entdeckungsverfahren)”〕 자생적 질서를 중시한 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질서와 자유경쟁에 대한 신봉자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는 경쟁정책 및 경쟁법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와

1) 원문은 Eucken, Walter, Wettbewerb, Monopol und Unternehmer, Badnauheim, 1953 참조.

경쟁이라는 관념들이 오랜 사상적 투쟁과정을 거쳐 얻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강연의 처음을 “기선이 강을 지나갈 때면, 그것이 이미 사라진 뒤에도 파도는 여전히 양안을 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는데 19세기를 지배하던 집단주의적 관념들이 20세기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첫째, 사유재산 대 공유재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칼 막스를 사유재산과 연결된 사적 힘의 남용현상을 간파한 점에서 현실주의자(Realist)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가 공유재산제도를 통해 그러한 경제적 힘의 남용이 제거될 것이라고 믿은 점에서는 공상주의자(Utopist)라고 비판하였다. 독점문제는 국가화나 사회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중앙집권적 조종 대 소위 개인적 생산의 방임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경쟁이 ‘경제적 폐허를 대가로 수많은 희생자 위에 하나님의 행운아가 존재하는 살인적인 투쟁’을 초래한다는 생시몽주의 자들의 관념을 오래된 오류라고 지적하고 아직 이런 중앙통제적 조종이 ‘사회적’이라는 환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경제운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즉 계획책임기관의 조종을 통하여 제어되는 중앙통제행정경제(Zentralverwaltungswirtschaft)와 수많은 개별경제행위를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경제적 교환을 하며 가격자동조절장치가 존재하는 교환경제(Verkehrswirtschaft)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질서형태 중 어느 것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Adam Smith의 ‘모든 생산의 목적과 목표는 소비에 있다’는 말에서 해답을 얻고 있다. 즉 “생산자의 관심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수적인가” 하는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중앙통제경제는 소비자의 최적의 자원배분 문제를 나쁘게 해결하는데 어떻게 중앙계획기관이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절차를 충분히 조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경영에서 생산수단을 필요한 비율로 적시에 제자리에 배치하고 긴급한 필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어떤 결정시 기업가에게 주어져야 하는 자유의 상관개념은 ‘원래의 경제지배자, 즉 전체소비자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Franz Böhm²⁾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잘못된 배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자신의 재산을 시장에 담보한 기업가가 감수해야 하는데 생산수단의 일반적 공동소유가 지배하고, 관료가 생산을 지도하고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경제질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

2) Franz Böhm(1985-1977)은 법학자로서 오이肯과 함께 질서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1928년 「사적 인 힘의 문제(Das Problem der privaten Macht)」, 1933년 「경쟁과 독점투쟁(Wettbewerb und Monopolkampf)」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1957년 독일경제한방지법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그는 1948년 오이肯과 함께 <ORDO: 경제와 사회질서를 위한 연감>을 창간하였다.

한편 사회적 문제 역시 오직 자유질서 하에서만 해결가능 하다고 한다. 즉 자유와 안전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도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안전은 오직 자유가 지배하는 곳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교환경제에서는 가격메카니즘이 기업과 가계에서 노동력과 재화의 흐름을 의미있게 배분되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이 최적으로 충족되도록 하며, 동시에 이러한 질서에서는 가장 자유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고 안전을 최고도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환경제의 이 같은 요소들이 발현되자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오이肯은 교환경제의 원초적인 목적은 “오직 완전경쟁이 존재하고 진정한 능률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은 흔히 자유방임과 개념적으로 가깝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유방임적 경제정책과 완전경쟁개념을 염격하게 분리하여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역사적 경험은 완전경쟁시장이 매사를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즉 이른바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정책은 자유를 담보하지만 스스로 경쟁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하여 여러 면에서 다른 시장형태, 즉 지역노동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독점, 수많은 지역상품 시장에서 독점 혹은 과점 그리고 카르텔의 형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뒤에서 설명이 되겠으나 자유방임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독점투쟁)이 생겨나며, 그 결과로 독과점적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독점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공급자간 수요자간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항상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여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경쟁을 제거하려는 깊은 충동이 여러 곳, 모든 시기에 살아 숨쉬고 있다. 보편적으로 ‘독점의 경향’이 존재한다”.

독점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독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설정함에 따라 생겨나는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즉 경쟁 가격에 기초한 경제절차에서의 계획과 조종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가 전체 경제적인 희소성을 항상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보여주고 다른 면에서는 가격산정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독점의 경우에는 가격인하의 외부적 강제 그리고 내부적인 유인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체제에서의 공급자와 달리 독점사업자는 늘 그의 공급에 대한 가격의 반응을 고려하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공급시설은 그래서 적정하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우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지금까지 경쟁이 존재했던 70개의 안전면도날 공장이 가격카르텔을 체결하고 가격을

10% 인상하는 경우 개별기업은 안전면도날 생산을 확대하면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상된 가격은 안전면도날의 부족을 실제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시장은 균형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생산된다고 한다. 한편 개별기업의 생산을 인상된 가격에 맞추려고 시도하는 경우 반대로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는 결론적으로 투자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종종 독점사업자들은 위험 없이 과잉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 경제의 자본에서 너무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철도전동화나 시멘트 공장 건설에 투자되고 이에 비해 다른 급박한 수요, 예를 들면 주택건설은 경시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독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가격 및 이자체 계의 조종시스템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아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우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자본흐름의 조종메카니즘이 불확실해지고 상품파괴, 과소투자 그리고 과잉투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독점가격이 전체 경제적인 희소성을 경쟁가격보다 매우 부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소비자들은 지배적지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독점투쟁을 19세기, 20세기 경제사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독점투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는 원료공급자, 공급과 판매망, 신용,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는 소비자 및 특허(차단특허)의 차단행위, 스트라이크와 직장폐쇄를 들고 있다. 차단의 완화된 형태로 배타적 계약과 충성할인이 있으며 계획적인 가격할인 – “약탈가격”은 독점투쟁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한편 이러한 독점투쟁을 사람들이 완전경쟁과 동격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완전경쟁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 독점투쟁이 생겨 날 수 있다”고 한다. 독점투쟁이 왜 나쁜가? 중요한 것은 투쟁의 과정에서 비용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가격이 재화의 희소성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는 가격체계의 정상적 기능(Funktionsfähigkeit)을 해치게 된다. 또한 독점투쟁에서는 방해경쟁(Behinderungswettbewerb)이 능률경쟁(Leistungswettbewerb)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기존 시장지위의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는 “누군가가 독점투쟁을 보장하면 능률경쟁의 발전을 방해하고 능률경쟁을 추구하려면 독점투쟁을 긍정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즉 사적소유는 경쟁질서의 전제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대로 사적소유제도가 경쟁질서의 실행을 위한 보증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장형태에 따라 사적소유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의 기능

도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점적 시장형태에서의 사적소유는 심각한 손해를 야기 한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상태에서는 사적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힘의 배분에 있어 균형이 존재한다(F. Spiegelhalter). 그러나 그것은 사적소유의 성격이 진실로 경쟁과 부합할 때만 유효하다. 사적소유가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비소유자에게도 효용을 가져온다는 것은 경쟁질서의 범주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경쟁질서의 전제조건이듯이, 경쟁질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경제적·사회적인 불공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의 전제조건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경쟁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는 경쟁질서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원칙으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을 가진 자는 손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전체 질서가 경쟁질서이어야 할 때 경제적 전체 질서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경쟁질서는 개인적 책임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통제경제에서는 명령은 중앙통제기관에서 나오고, 위험은 경영이 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종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경쟁이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독점이 지난세기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의 과소투자의 원인이고 거기에서 과소고용과 실업이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예를 들면 만약 생산수단 가격이 카르텔을 통해 높게 유지되고 있거나 임금이 국가의 개입에 의해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과소투자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1931년의 위기시대에 베를린의 건축업자들은 주택가격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신디케이트를 통해 고정된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생산수단 가격과 상대적으로 경직된 임금 때문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는 통화, 상업, 임금정책 등 실험적 경제정책의 비정상적인 불안정성이 신뢰의 분위기를 깨고 과소투자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경제정책의 불변성을 매우 강조한다. 불변성은 경쟁질서를 세우려는 정책을 위한 중심적인 요구라고 말한다. 그는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경쟁질서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경제정책이 연속적으로 불변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경쟁질서가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모든 개별원칙은 오직 경쟁질서의 일반적인 설계의 틀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경제헌법적 기본원칙이다”.

그는 경쟁질서의 과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리고 인간존엄적 사회경제적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그것은 사회적 문제를 자유정신에서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서 자유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질서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에게는 전체 질서의 틀에서 특별하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질서정책적 책임이 주어진다. 경쟁질서는 그에게 역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그의 미래가 경쟁질서와 함께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이 그에게 맡겨진 과제를 정확하게 보고 충족시키는 능력은 자유롭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경제사회질서가 구현되는지에 달려 있다”. 경쟁저널